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60 |
|----------|----|

2022. 9. 16.(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윅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

라. 상정일자: 2022년 9월 16일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윅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북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사업(안 제5조)
- 지원방법(안 제6조)
- 환수(안 제7조)
- 평가(안 제8조) 및 협력체계(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제정 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와 정보기술(IT) 발달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역량과 전문 기술을 갖춘 산업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등교 축소 및 실습 시간 부족 등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등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졸자에 비해 양질의 취업기회가 적어 학교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이 저조한 상태임.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 (2019) 65.14% → (2020) 60.46%

※ 교육부 보도자료(2021. 8. 9)

2020년도, 2021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단위: 개교, 명, %)

| 년도 | 구분 | 학교수 | 졸업자 | 취업자현황 | |
|------|----|-----|--------|--------|------|
| | | | | 취업자 | 취업률 |
| 2021 | 총북 | 26 | 3,754 | 995 | 58.1 |
| | 전체 | 581 | 78,994 | 22,583 | 55.4 |
| 2020 | 총북 | 26 | 4,150 | 1,078 | 52.1 |
| | 전체 | 576 | 89,998 | 24,938 | 50.7 |

※교육부 2020년도, 2021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편집자료

-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유망산업 분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고,

| 연도 | 선정학교 총계 | 유형별 선정 현황 학교(학과 수) | | | | 예산규모 |
|-------|----------------|--------------------|-----------|---------------|--------|---------|
| | | 유형전환 | 학교 통폐합 | 학과 재구조화·개편 | 학급증설 | |
| 2016년 | 96개교(155개 학과) | - | 3 | 87(141) | 11(13) | 786.5억원 |
| 2017년 | 71개교(121개 학과) | 3(8) | - | 62(103) | 10(10) | 596.5억원 |
| 2018년 | 61개교(98개 학과) | - | - | 59(95) | 3(3) | 453억원 |
| 2019년 | 91개교(125개 학과) | 1(1) | - | 86(120) | 4(4) | 560억원 |
| 2020년 | 101개교(153개 학과) | 1(2) | - | 97(146) | 4(5) | 711.5억원 |
| 2021년 | 101개교(148개 학과) | 1(3) | - | 98(143) | 2(2) | 615.5억원 |

- 2021년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1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였음.

■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등 24,0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하여 취업준비에 도움 줌

■ 직업계고 2학기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교사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배치하여 실습역량 향상 유도

※ 2021. 8. 10. 교육부 보도자료

- 충청북도교육청도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해 학과개편 노력을 지속하여, 2020년에는 4개 학교 7개 학과, 2021년 8개 학교 13개 학과, 2022년에는 4개 학교에서 9개 학과를 개편하였음.
- 또한, 2021년부터 『직업계고 1, 2학년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과 『직업계고 3학년 대상 고졸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직업계고 1, 2학년 자격증 응시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2021년 2억: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예산

■ 고졸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직업계고 3학년 취업희망자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50만원 지원

- 2021년 474,5000천원(정부지원예산: 237,250천원,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예산: 237,250천원)

- 2022년 5억: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예산

※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도, 2021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0년도 52.1%(전국 50.7%), 2021년도 58.1%(전국 55.4%)로 6%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나, 충청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 진입을 지속적으로 높여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단위: 개교, 명, %)

| 년도 | 구분 | 학교수 | 졸업자 | 취업자현황 | |
|------|----|-----|--------|--------|------|
| | | | | 취업자 | 취업률 |
| 2021 | 총북 | 26 | 3,754 | 995 | 58.1 |
| | 전체 | 581 | 78,994 | 22,583 | 55.4 |
| 2020 | 총북 | 26 | 4,150 | 1,078 | 52.1 |
| | 전체 | 576 | 89,998 | 24,938 | 50.7 |

※교육부 2020년도, 2021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편집자료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를 반영한 것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과 세부 사업추진을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는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을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¹⁾로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을

1)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도니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충청북도내 직업계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3개교와 23개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체 26개교가 있음.

- 특히, 조례안의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정부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되었던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 외에 지난 8월26일 ‘충북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 간담회’ 에서 제시된 산업현장의 요구와 충청북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어능력 시험 지원,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도내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지원과 실효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현황(총 26개교)]

(2022. 기준)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4개교) | 특성화고등학교 : 23개교 |
|--|---|
| 한국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제천산업고등학교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영동미래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등학교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주공업고등학교,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제천상업고등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진천상업고등학교,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청주여자사업고등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청주IT과학고등학교 |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 안 제6조에는 취업역량강화 지원예산을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고, 지원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첨부된 취업역량강화 지원예산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공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외에 외국어 능력 시험 등의 지원 사항이 반영되어 충북도내 26개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9,812명을 대상으로 연간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
- 안 제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받았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추진 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와 직업교육활동을 향상시켜 도내 직업교육 활성화와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향후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와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 선정

3.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4. 취업역량강화 지원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취업역량강화 지원방법 및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전액을 환수 해야 한다.

제8조(평가)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8. 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

1. 29., 2001. 3. 2., 2007. 5. 16., 2010. 6. 29., 2013. 3. 23., 2020. 2. 28.>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삭제 <2020. 2. 28.>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5. 16.,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2014. 12. 9., 2020. 2. 28.>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2020.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2020. 2. 28.>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⑧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2014. 2. 18., 2014. 12. 9.>

[대통령령 제30494호(2020. 2.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 2. 18., 2014. 1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비

3. 관련조문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영어, 제2외국어 등)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응시료

| 구분 | 종목 | 응시료 | 비고 |
|-------|------------|-------------------|--------|
| 전공분야 | 기능사 | 약50,000원~100,000원 | 종목별 상이 |
| 어학 관련 | 토익 | 48,000원 | |
| | 일본어능력시험 | 45,000원~60,000원 | 급수별 상이 |
| | HSK시험(중국어) | 30,000원~130,000원 | 급수별 상이 |

2) 취업역량 강화 지원 예산액 추계

(단위: 억원)

| 연도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비고 |
|------|------|------|------|------|------|----|
| 지원한도 | 7 | 7 | 7.5 | 7.5 | 7.5 | |

3)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2022. 기준)

(단위: 명)

| 대상학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
| 직업계고 26교 | 3,248 | 3,174 | 3,390 | 9,812 |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5년) | 계 | |
|-----------------------|-----------------|-----------------|-----------------|-----------------|-----------------|-----------|-----------|
| 세 입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보통교부금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세 출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취업역량강화 예산지원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재원 조달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의존 재원 | 소 계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국고보조금 | | | | | | |
| | 보통교부금 | 700,000 | 70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3,650,000 |
| | 특별교부금 | | | | | | 0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0 |
| | 자체수입 | | | | | | 0 |
| 지방채 | | | | | | 0 | |
| 기 금 | | | | | | 0 | |
|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0 | |